

웅지세무대학교	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 처 리 에 관 한 규 정	문서번호	7-6-02(M)-0
		제정일자	06.04.20
		최근개정	15.04.01
		주관부서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희롱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1.>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여성 또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며 성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서 성구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05.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2015.04.01.>

제4조(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1.01.>

① 육체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6.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③ 시각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설적인 사진, 그림,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직접 또는 매체(팩스, 컴퓨터, 우편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3.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④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2장 성희롱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희롱 상담소

제5조(설치)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학처에 성희롱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4.01.>

제6조(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5. 성희롱예방교육 실적 보고

제7조(조직)

- ① 상담소장은 4인 이내의 상담원을 남녀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2008.05.01., 2015.04.01.>

- ② 상담소장은 상담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2절 성희롱대책위원회

제8조(설치) 성희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성희롱예방 기본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희롱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남녀 각 1명의 학생대표를 포함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8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1.01., 2008.05.01., 2015.04.01.>

~~③ 삭제-<2007. 01. 01.->~~

④ 학생대표는 학생과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학처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04.01.>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성희롱 상담 및 처리절차

제11조(신고) 피해자는 서면, 구술, 통신 및 방문 등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리인이나 사회기구 및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와 상담) ① 성희롱 상담 소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자유스럽고 정당한 환경에서 조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상담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피해의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신고내용을 보고하고 사건처리를 요청한다.

제13조(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 12조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학칙에 징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건전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징계를 정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의 지도
 5.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처벌 조치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 조치
-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준수) 성희롱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5.01.>

제1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부 칙 <1판-제정/시행/공포 2006.04.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7.01.0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08.05.0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15.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1. 제5조, 제9조제6항 "학생처"를 "교학처"로 개정하다
2. 제7조제1항의 "상담소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상담원은 4인 이내로 남녀 각 1인을 포함하여 학생처장이 지정한다"를 "상담소장은 4인 이내의 상담원을 남녀 각 1인을 포함하여 상담소장이 지정한다"로 개정하다
3. 제3조 "전임교원(초빙교수, 겸임교수, 조교, 시간강사 포함), 직원 및 학생"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학생"으로 개정하다
4. 제9조제2항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학생처장의 추천"을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개정하다.